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법적근거 마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25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 · 김성환 · 박희승 · 김남희 · 신영대 · 허종식
정성호 · 정진욱 · 박해철 · 어기구 · 강유정 · 이연희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 의안번호 : 4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항 제외)에 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국회 관계 법률안·규칙안 심사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표-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의장의 의견제시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①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현재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업무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은 총 49건(법률 11건, 국회규칙 39건)이 있음. 한편, 국회규칙은 ① 「국회법」 제169조¹⁾에

1) 「국회법」 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따라 법률안의 처리절차와 같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폐지가 확정되는 ‘본회의 의결대상 규칙’과 ② 「국회사무처법」 제14조 등²⁾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의결)만으로 제정·개정·폐지가 확정되는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대상 규칙’으로 나뉘어짐.³⁾(참고자료1 참조)

현재 ‘국회 관련 법률’과 ‘본회의 의결대상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안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① 「국회법」 제79조⁴⁾에 따라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 또는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하거나, ② 「국회법」 제51조⁵⁾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안’의 형태로 법률 또는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제안하여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국회 관계 법률’과 ‘본회의 의결대상 규칙’은 실무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이를 위

2) 「국회사무처법」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 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국회도서관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3) 국회규칙안 중 본회의 의결 대상 규칙안은 대체로 국회의원과 관련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대상 규칙안은 대체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4)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5)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원회안 또는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여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음⁶⁾.

[표-1] 국회관계법률·규칙 제·개정 심사절차

구 분	예 시	심사절차
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사무처법 등	의원발의 (국회법§79) → 운영위 심사·의결 → 법사위 → 본회의
규칙안 (본회의 의결)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등 * 국회의원 또는 국회운영 관련 사항	위원회안 (국회법§51) → 운영위 심사·의결 → 법사위 → 본회의
		국회의장 의견제시 (법적근거 없음) → 운영위 심사·의결 ※ 위원회안 ·대안 처리 → 법사위 → 본회의
규칙안 (운영위 동의)	국회인사규칙, 국회사무처 직제 등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관련 사항	국회의장 동의요청 (사무처법 §14 등) → 운영위 심사·의결(동의)

예를 들어,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의장 의견제시가 총 15건 접수되어 이 중 11건이 위원회안 또는 대안의 형태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참고자료 2 참조),

6)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장 의견제시’는 국회의장의 국회 대표권 및 사무감독권(「국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거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국회 관례로 정착되었다는 설명임. 참고로, 2001년 이전에는 현행 ‘국회의장 의견제시’ 대신에 국회사무총장 의견제시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의장 의견제시는 2001년(제16대 국회)로 파악된다는 설명임.

제21대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규칙안 12건 중 9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의견제시’만을 토대로 심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본회의 의결 대상 규칙은 대체로 ‘국회의장 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심의·의결되고 있음.

[표-2] 제21대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규칙안 현황

규칙안명	본회의 의결일	발의(제안)자	비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20.8.4	백혜련의원 외 12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6.1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장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1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4.29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6.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에서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12.9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規則 전부개정규칙안	2023.6.21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6.21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23.10.6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관계 법률·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회의장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7)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등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상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절차적 적법성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2021년 12월 1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제출된 국회규칙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 의견제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⁸⁾.

7)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8) ○○○의원: 국회의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법안을, 규칙안을 내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장 의견제시’**라고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형태로 규칙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 규칙안 자체가 상정된 게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올라온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거가 없잖아요.....

○○○의원: 논의는 하고 운영위에서 저희가 다루는 건 맞는데, 그러면 현재 국회법상 법안 상정, 법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인 것을 다 지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국회의장 의견제시 사항으로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절차도 갖추지 않고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거지요.** 그랬으면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아서 규칙안은 운영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시고 그리고 전체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심사 처리하는 절차들을 꼭 밟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의원: 국회와 국회의장 이 부분에 관해서, 제일 좋은 것은 국회의장이 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국회의장안으로 나오면 되는데 또 최종 결정, 의사진행을 하는 분이라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해서 아마 편의상 누군가 시작하는 것은 그냥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하는 거나 이런 형식으로 빌려서 이런 초안을 만들 테니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식 절차를 해 주십시오, 국회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둘째,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의 조직·운영·업무 등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각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조직·운영·업무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⁹⁾,

이에 따라, ① 대법원장은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개정의견’(2005.7.14.), ‘법원조직법 개정의견’(2005.10.19.), ‘행정소송법 개정의견’(2006.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견’(2010.6.23.),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2023.1.5.)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2013.6.14.)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21.5.28.),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21.4.21.),

게 이런 것뿐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관행상. 그러니 과연 여기에 관해서 법리를 절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회의장, 국회 그다음에 위원회, 사무처 여기에 역할 구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히 언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라.....

○○○소위원장: 우리가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이 사항 포함, 규칙안 국회의장 동의 요청에 대한 형식의 문제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규칙개정안의 여야 간사 합의 아니면 운영위 발의 기준을 좀 명확히 만들자, 의결 형식의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391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1년12월1일) 회의록에서 발췌)

9)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동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23.1.17.) 등 정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수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대통령실·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항 제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의장 의견제시는 “국회 관계 법률·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범위가 예결산 관련 사항이나 결의안¹⁰⁾·승인안¹¹⁾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15

10)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으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있음.

11)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승인안으로는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이 있음.



구분		법률 및 규칙 현황
국회관계법률 (11건)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미래연구원법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규칙 (39건)	본회의 의결 (24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구분	법률 및 규칙 현황
	본회의 의결 (24건) • 국회방청규칙 •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 국회에서의 중계 방송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국회정보공개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칙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구분	법률 및 규칙 현황
	국회운영위 의결 (15건)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국회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도서관 직제 ● 국회사무처 직제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국회인사규칙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 전문위원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연번	제출일자	의견제출 건명	주요내용	처리현황
1	2020. 10. 15	「국회사무처 행정 심판위원회규칙」 개정 의견 제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회사 무처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공인전자서명’ 대신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을 사용하도록 함	2020.12.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2	2020. 11. 27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2021. 5. 18. 본회의 의결 (대안)
3	2021. 2. 4	「국회사무처 행정 심판위원회규칙」 개정 의견 제출	국회에 설치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 회’에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 경하고, 국회도서관 등 소속기관의 처분 등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임을 명시함	2021. 6. 2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4	2021. 4. 27	「국회에서 의중계 방송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 제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해 「국회법」 제149조제3항이 신설 됨에 따라(2021. 6. 23. 시행) 한국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관 련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2021. 12. 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5	2021. 5. 24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	2021. 12. 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6	2021. 6. 1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법」 개정(20. 12. 22.) 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1. 6. 23. 시행) 국회공직자윤리위 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법에서 국 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을 보완	2021. 12. 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7	2021. 6. 16	「국회정보공개규칙」 개정 의견 제출	정보공개 교육 실시, 청구인의 주 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시행(21. 6. 23.)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2021. 12. 9.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연번	제출일자	의견제출 건명	주요내용	처리현황
8	2021. 11. 8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두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9	2021. 11. 8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소속이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 관련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10	2022. 3. 30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	2023. 6. 21. 본회의 의결 (대안)
11	2022. 3. 30	「국회청원 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	의원소개청원에 대한 전자청원제도 도입, 전자청원시스템 중단 시 찬성·동의 기간 연장 등	2023. 6. 21.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12	2022. 3. 30	「國會議員手當 등에 관한規則」 개정 의견 제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칙의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등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	2023. 6. 21.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13	2023. 1. 5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규정	2023. 10. 6. 본회의 의결 (위원회안)
14	2023. 8. 1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강화 또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15	2023. 8. 18	「국회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4. 5. 29. 임기만료폐기